

관세청고시 제2022-4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8호, 2022.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40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95	2022-40호('22.7.28)	JUJUBE with WALNUT 등 2건	
496	2022-40호('22.7.28)	Supplementary feed 등 19건	
497	2022-40호('22.7.28)	MabSelect SuRe 등 3건	
498	2022-40호('22.7.28)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	
499	2022-40호('22.7.28)	BetafineXL	

495. JUJUBE with WALNU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ujubes, dried; JUJUBE with WALNUT	품목분류2과-3504 (‘21.04.14.)
2	Jujube, dried; BIG JUJUBE WITH WALNUT; PR.CHNA	품목분류2과-147 (‘18.01.09)

○ 물품설명

-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한 후 수지팩에 소매포장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813.40-2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3.50-0000호

○ 변경사유

- 건조 대추와 호두를 함께 섭취할 목적으로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 후 소매포장한 건조 과실과 견과류의 혼합물로 보아 제0813.50-0000호에 분류 (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6. Supplementary feed 등 19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upplementary feed; 멀티액티브(MULTI ACTIV)	품목분류2과-10236 ('20.12.22)
2	Supplementary feed; Fysal Econ	품목분류2과-9195 ('20.11.18)
3	Supplementary feed; SAL CURB K1 LIQUID	품목분류2과-2071 ('20.03.12)
4	Supplementary feed; Intrasan pH Oral	품목분류2과-624 ('20.01.22)
5	Supplementary feed; SAL CURB LIQUID; 액상 보존제	품목분류2과-5985 ('19.08.05)
6	Supplementary feeds; SELACID-MP; NETHERL	품목분류2과-2869 ('19.04.24)
7	Supplementary feeds ; Novimold-S	품목분류2과-1206 ('18.02.13)
8	Supplementary feed ; X-몰드시드 (X-MoldCid) ; GERMANY	품목분류4과-229 ('17.03.08)
9	Supplementary feed; Prophorce AC601; NETHERL	품목분류2과-3388 ('17.02.28)
10	Supplementary feed; GUSTOR LIQUID; SPAIN	품목분류2과-5815 ('16.06.03)
11	Supplementary feed; HYGEN PRO; SPAIN	품목분류2과-5467 ('16.05.26)
12	Supplementary feed; Sal CURB K2 Lite Liquid; SNGAPOR	품목분류2과-193 ('15.01.09)
13	Supplementary feed; Moldtech; PR.CHINA	품목분류2과-3715 ('14.06.03)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4	Supplementary feed; Sal CURB brand K2 Liquid; SNGAPOR	품목분류2과-273 ('13.01.14)
15	Supplementary feed; Optimax; England	품목분류2과-284 ('12.01.10)
16	Supplementary feed; LIPTOBAC-L	품목분류2과-1510 ('11.06.01)
17	Supplementary feed ; NEO-ACID, 1L ; FRANCE	품목분류2과-1863 ('09.12.01)
18	Supplementary feeds; MYCO CURB AW LIQUID	품목분류과-103961 ('05.04.28)
19	Supplementary feed	분석47260-0939 ('03.09.01)

○ 물품설명

-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포름산(Formic acid), 글리세롤(Glycerol)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으로 사료 제조시 곰팡이 등의 발생 및 성장 억제할 목적으로 첨가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08.94-0000호

○ 변경사유

- 유기산(프로피온산, 포름산 등)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곰팡이와 미생물 등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제로 보아 제3808.94-0000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7. MabSelect SuR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bSelect; 17-5199-99; SWEDEN	품목분류2과-3732 (‘16.04.15.)
2	MabSelect SuRe; 17-5438-99	품목분류2과-5427 (‘13.07.26.)
3	MabSelect SuRe LX(17-5474-99)	품목분류2과-9132 (‘12.12.04.)

○ 물품설명

- Protein A를 다공성 유리에 고정화하여 완충용액으로 보존 처리한 유백색 현탁액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으로, 컬럼(column)에 충전하여 항체 정제용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2.00-202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 변경사유

-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Protein A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체를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은 실험실용 조제시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성분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다만 ①~③ 물품은 구성성분이 Protein A를 천연중합체인 아가로스(Agarose)에 리간드를 결합한 변성한 천연중합체에 해당하므로 제3913.90-9090호로 변경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 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8.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 여성구두; MK-SL01	품목분류4과-12227 ('19.10.30.)
2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uppers of leather ; SWK121 ; PR.CHNA	품목분류4과-5951 ('18.12.7.)
3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uppers of leather ; SWK112 ; PR.CHNA	품목분류4과-5952 ('18.12.7.)
4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118380011461; PR.CHNA	품목분류4과-152 ('18.01.10)
5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닥터마틴; 14345001 1461 MONO LACE SHOE-BLK-SMOOTH; PR.CHNA	품목분류4과-146 ('18.1.10.)
6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닥터마틴; 16592001 CRUISE CORONADO 3 EYE SHOE BK WYOMING; PR.CHNA	품목분류4과-74 ('18.1.5)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로써, 발등 부분에 별도의 장식과 조임 장치가 없으며 바깥 바닥은 뒷굽이 없고 요철 가공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6403.99-1000호,
④~⑥제6403.99-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③제6403.99-9000호,
④~⑥제6403.99-1000호

○ 변경사유

-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인 ①~③번 물품은 제6403.99-9000호의 그 밖의 신발로 분류하고, 드레스화 정의에 부합되는 ④~⑥번 물품은 제6403.99-1000호에 분류 (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9. BetafineX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extile filter element; BetafineXL 10,10micron; U.S.A	품목분류2과-8783 (’13.11.26.)

○ 물품설명

-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플라스틱 외부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필터 카트리지’로, 여과기 하우징(미제시) 내부에 장착하여 정수용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 변경사유

- 여과가 이루어지는 하우징 내부에 삽입되는 필터 카트리지로, 플라스틱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물품에 대해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21.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